
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안내

1. 신청 서식 (환자가구 [별지 제1~5호], 부양의무자가구 [별지 제2,3,5호] 제출)

- ① 별지 제1호서식(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)
- ② 별지 제2호서식(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)
- ③ 별지 제3호서식(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)
- ④ 별지 제4호서식(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, 환자용)
- ⑤ 별지 제5호서식(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)

※ 별지 제3호, 제5호 서식은 반드시 자필 정자서명

2. 구비 서류

- ①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원본 1부
 - 최종진단명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
 -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(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)
- ※ 최종진단에 체크, 최종진단명, 상병코드, 진단일자 모두 기재되어야함
- ※ 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같음
(단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질환이 다를 경우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)
-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1부 (환자, 부양의무자 기준 각각 발급)
 -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나와야 함
 - 재혼가정의 경우,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 제출
- ③ 신청자(환자)의 통장 사본 1부
- ④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확인서(환자가구,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제출-해당자에 한함)
 - ※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되어있어야 함
- ⑤ 소득·재산관련 서류
 - 상시근로자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), 임시·일용직(최근3개월간 소득증명서), 자영업자(소득금액증명원/세무서발급), 부채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※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만18세 이상 환자가구 모두)
- ⑥ 장애정도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 - 간병비 신청자: 장애정도 결정서
 - ※ 지체 또는 뇌병변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(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)
 - 보조기기 구입비 신청자: 장애인 증명서 (장애인 등록자만 신청 가능)
 - 만성신장병(N18): 장애인 증명서, 장애정도 결정서, (구)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(신장장애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’)
 - 파킨슨(G20): 장애인 증명서, 장애정도 결정서, (구)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(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’)
- ⑦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(환자가구,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제출)
 - 차량가액 전액 재산으로 산정

※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 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